##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751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김도읍·김태흠·안병길

구자근・추경호・권명호

박덕흠 • 전봉민 • 김성원

조수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되기만 하면 임원의 선임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서로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협동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지나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1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	
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	
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한정후견인		<u>&lt;삭 제&gt;</u>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